



Australian Government

# Fair Work

## OMBUDSMAN

### 언어 지원

2009년 7월 1일부터 호주 노사관계법이 변경됩니다.

새로운 법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직장에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.

이 법의 변경에 따라 호주 대부분의 직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.

변경되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에 관한 것입니다:

- 고용인이 받아야 할 보수
- 휴가 권리와 노동 조건
- 고용주가 기록해야 할 내용
-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고용인과 고용주가 도울 수 있는 방법
- 인종이나 성, 성적 지향, 연령, 신체 및 정신 장애, 결혼 여부에 기초한 차별이 없을 것

###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?

다음의 두 조직이 새로운 전국 노사관계 시스템을 관장하게 됩니다.

Fair Work Australia 와 Fair Work Ombudsman.

Fair Work Australia는 전국 노사관계 재판소로서, 다음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조직입니다:

- 최저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망과 고용 조건
- 기업 매매
- 노동 쟁의
- 분쟁 해결
- 고용 종결
- 기타 노사관계 사안.

Fair Work Ombudsman:

- 호주 노사관계법에 대한 조언과 교육 실시
- 전국 노사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 조사
- 직장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출판
- 중소기업을 위한 자원과 정보 제공.

###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?

- Fair Work 인포라인 전화 13 13 94번으로 연락하십시오.
-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(TIS) 전화 131 450번에 연락하십시오. 시내 전화 요금으로 하루 24시간, 일주일 내내 연결됩니다.

**Fair Work Infoline: 13 13 94** [www.fairwork.gov.au](http://www.fairwork.gov.au)